

한의학,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시다.



대한한 의사 협회

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

(우)157-200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-27 / (전화) 02-2657-5055,5069 / (팩스) 02-2657-5096
교육국제학술국 교육팀 팀장:김성진 담당:이선희 E-mail:isom5000@daum.net

문서번호 대한의 제 2697 호

기안일자 2016. 12. 7.

경 유

수 신 보수교육기관장

참 조

선 램			지 시	
접 수	일자 시각	.	결 재	
	번호	:	·	
처 리 과			공 램	
담 당 자				
심 사 자			심 사 일	

제 목 보수교육규정 개정사항 및 보수교육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

1. 관련근거 : 대한의 제2617호(2016.11.24.), 이사회 서면결의 결과 안내

2. 위 근거에 의거, 아래와 같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수교육규정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및 준수하시어 보수교육 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보수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

- 보수교육계획 승인요청 시 보수교육 담당직원 및 관리책임자 명시(연락처 포함)
- 보수교육강사 선정 시 보수교육규정 제7조를 참고하여 강사의 자격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, 보수교육계획 승인요청 시 강사자격 증빙서류 제출
-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, 입실용과 퇴실용 등록대장 2부를 비치하여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함
- 보수교육강사에 대한 평점인정 규정 삭제

□ 보수교육규정 개정사항

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<p>제4조 (보수교육기관) ①~② <생략> 1. <생략> 2.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정회원 학회(이하 '분과학회' 라 한다)</p> <p><신설></p> <p>3. 기타 의료법시행규칙 및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</p>	<p>제4조 (보수교육기관) ①~② <현행 동일> 1. <현행 동일> 2.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 학회(이하 '분과학회' 라 한다), 또는 대한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의 정기적 학술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 3. 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4. 기타 의료법시행규칙 및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</p>	<p>○ 학술 및 교육 역량을 객관적 요건으로 갖춘 한의계 재단체에 대하여 보수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보수교육의 양적, 질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</p>
<p>제6조 (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) ① <생략> 1. 보수교육위원회 및 직원구성</p> <p>2.~4. <생략> ② 보수교육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이후 제1항 각 호의 조건이 미비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는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 (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) ① <현행 동일> 1. 보수교육담당부서·직원구성 및 관리책임자</p> <p>2.~4. <현행 동일> ② 보수교육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이후 제1항 각 호의 조건이 미비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는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</p>	<p>○ 현행 규정의 '보수교육위원회'는 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위원회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 용어를 정비함 ○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와 교신하면서 보수교육 관련 업무협조를 수행할 수 있는 보수교육기관의 관리책임자를 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에 명시하여 보수교육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</p> <p>○ 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 미비 교육기관의 자격 취소 근거를 마련함</p>
<p>제7조 (강사의 자격) ① <생략> 1.~2. <생략> 3. <u>한의사(의사)로서 5년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는 자</u></p> <p><신설></p> <p>4.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위원회는 한의사가 아닌 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7조 (강사의 자격) ① <현행 동일> 1.~2. <현행 동일> 3. <u>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도전문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</u></p> <p>4. <u>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, 관련 분과학회의 인정이 있거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 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재한 자</u></p> <p>5.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위원회는 특정한 보수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의사가 아닌 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. ③ 보수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승인요청 시 제1항에 명시된 강사의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○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는 동시에 자격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</p> <p>○ 한의의료 외 다양한 전문분야 보수교육을 위하여 한의사가 아닌 강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수교육 승인요청 시 강사의 자격을 증빙하도록 함</p>

<p>제12조 (등록대장 및 평점 카드 교부) ① 교육기관은 교육 시행에 있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수교육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②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. ③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의 평점카드를 대체하여 별도의 참석 증빙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 (등록대장 등) ① 교육기관은 교육 시행에 있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수교육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. ② <삭제> ③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대장을 대체하여 별도의 참석 증빙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.</p>	<p>○ 복지부 출결관리 강화 요청을 반영함 ○ 현재 평점카드 사용하지 않는 현실 반영함. ○ 제1항, 제2항의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4조 (평점) ①~② <생략> ③ 보수교육강사에게는 1시간에 2평점을 인정한다. ④ <생략> ⑤ 논문평점은 정기간행물로 학술지 및 회지 등의 게재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저의 경우는 저자 모두에게 인정하며 소속지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<생략> <신설></p>	<p>제14조 (평점) ①~② <현행 동일> ③ <삭제> ④ <현행 동일> ⑤ 논문평점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정기학술간행물의 게재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소속지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<현행 동일> 2. 제출 학회지의 해당년도 기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또는 SCI(E) 등재 학술지임을 확인하는 증빙자료</p>	<p>○ 복지부 평점관리 강화 요청을 반영함 ○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논문의 질적수준 관리 및 논문 작성 기여도에 따른 보수교육 평점 부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함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【별표1. 평점인정기준】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30 1070 537 1397"> <thead> <tr> <th>교육종목</th> <th>교육기관</th> <th>평점</th> <th>연상한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논문게재</td> <td><신설></td> <td>1편당 / 2점</td> <td>3점</td> </tr> <tr> <td><신설></td> <td><신설></td> <td><신설></td> <td><신설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교육종목	교육기관	평점	연상한점수	논문게재	<신설>	1편당 / 2점	3점	<신설>	<신설>	<신설>	<신설>	<p>【별표1. 평점인정기준 개정안】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50 1070 957 1397"> <thead> <tr> <th>교육종목</th> <th>교육기관</th> <th>평점</th> <th>연상한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논문게재</td> <td>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/ SCI(E) 등재 학술지</td> <td>- 1저자, 교신저자 : 1편당 2점 - 공저자 : 1점</td> <td>4점</td> </tr> <tr> <td>한방병원교육</td> <td>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</td> <td>2점</td> <td>3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교육종목	교육기관	평점	연상한점수	논문게재	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/ SCI(E) 등재 학술지	- 1저자, 교신저자 : 1편당 2점 - 공저자 : 1점	4점	한방병원교육	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	2점	3점	<p>○ 논문게재 평점인정 기준 교육기관을 명시하고 평점 및 연상한 점수를 개정함 ○ 한방병원교육을 평점인정기준으로 신설함</p>
교육종목	교육기관	평점	연상한점수																							
논문게재	<신설>	1편당 / 2점	3점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<신설>	<신설>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종목	교육기관	평점	연상한점수																							
논문게재	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/ SCI(E) 등재 학술지	- 1저자, 교신저자 : 1편당 2점 - 공저자 : 1점	4점																							
한방병원교육	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	2점	3점																							
<p><신설></p>	<p>부칙(2016. 0. 0)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

■ 첨부 : 보수교육규정(2016.11.23 개정) 1부. 끝.

대한한의사협회

